##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05

발의연월일: 2022. 12. 6.

발 의 자:임이자・권명호・金炳旭

김형동 • 박대수 • 박성민

이주환 · 지성호 · 최영희

한무경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2010년 5월 20일 법령을 개정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관련 조항(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)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 법이 인용하지 않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평균임금 증감(제36조제3항 및 제4항) 및 최고·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(제36조제7항 및 제8항)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,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 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.

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6조제3항 및 제4항(평균임금 증감)과 제7항 및 제8항(최고·최저 보상기준)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 법률 제 호

##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"제5호제2호 및 제36조제6항"을 "제5조제2호, 제36조 제3항,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위로금의 지급 기준) ① (생	제25조(위로금의 지급 기준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	②
재해위로금은 「산업재해보상보	
험법」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	<u>제</u> 5조제2호, 제36조제3항, 제4
<u>항</u> 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	<u>항 및 제6항부터 제8항</u>
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	
곱한 금액으로 한다.	